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9조의2)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 및 주거·이용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범위를 규정

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안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예산·인력 확보 등을 규정

다. 재난관리자원 범위에 시설 추가 및 관련 정보요청(안 제43조)

1)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물자·자재 외에 ‘시설’을 추가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설’과 ‘이재민 구호시설’ 명시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에 사용할 비상대비 인력자원과 물품목록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안전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73조의7)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각종 안전 진단 결과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금지토록 규정

2)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하기 위해 ‘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 구성·운영

마.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상 확대(안 제73조의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개최 3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바.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및 활용(안 제83조의2, 3)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방법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권한 제한 등 준수사항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기반시설”을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2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을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기반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기반시설의”를 “국가핵심기반의”로, “국가기반시설을”을 “국가핵심기반을”로 한다.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39조의2, 제39조의4 및 제3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 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및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
2. 점검 분야 및 대상·지역 선정 등 대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검 주체·방식·범위 등 내용에 관한 사항
5.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소관 분야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립 지침을 통보받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제3항에 따른 수립 지침 및 제5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하단에 따른 시·도의 수립지침과 제7항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7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제3항에 따른 수립 지침, 제5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및 제8항에 따른 시·군·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및 제9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관련 정보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42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3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물자 및 자재”를 “물자, 자재 및 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설

9. 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시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제43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44조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인력·장비·자재”를 “인력·장비·자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의7의 제목 “(안전정보의 수집·관리)”를 “(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6조의9제2항과 관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자료로서 점검일정,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점검결과와 그에 따른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민간기관 등에게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또는 문서, 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66조의9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효율적인 안전정보 수집·관리·공동이용 활성화·공개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 통계청에서 안전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시·도 안전총괄과의 과장급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의 안전통계를 소관하는 부서장
4. 기타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과장(또는 부서장) 및 민간 전문가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일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방법, 추진전략,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정보의 수집·관리·공개·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1제1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및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천명”을 “1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1제1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통보”를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축제 7일 전까지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라목 중 “도면·위치”를 “영상, 도면·위치”로 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제83조의4부터 제83조의6까지로

하고,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서식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등의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보시스템
2. 긴급구조기관의 정보시스템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
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83조의3(정보의 보호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 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제85조의2를 삭제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조사 전담기구 간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조사 전담기구 간 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 제77조제5항의 기관에서 조사 전담기구를 편성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 협조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전담기구 간의 조사계획·활동 등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전담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의 추진과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각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1조의3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
2.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서 접수, 시험·검사 등의 의뢰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4. 제81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5. 제81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인증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

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5호 중 “지방환경청”을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의2 제102호를 제136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2호부터 제1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6호(종전의 제102호) 전단 중 “제101호까지”를 “제135호까지”로 한다.

102.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103.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104.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105.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
106.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107.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108. 구리포천고속도로주식회사
109.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
110.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111. 우면산용마인프라웨이주식회사
112. 용마터널주식회사
113.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114. 백양터널유한회사
115. 수정산터널주식회사
116. 을숙도대교주식회사
117. GK해상도로주식회사
118. 북항아이브리지주식회사
119.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
120. 대구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
121. 문학개발주식회사
122. 원적산터널주식회사
123. 만월산터널주식회사
124. 광주순환주식회사
125.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126.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
127.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128. 울산하버브릿지주식회사

129. 일산대교주식회사
130. 제삼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
131.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132.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
133. 미시령도서관통도로주식회사
134. 마창대교주식회사
135. 경남하이웨이주식회사

별표 2의 제목 중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을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인력을 모두”를 “목 해당 분야의 인력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연구·개발을 위한”을 “연구·개발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원을 위한”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통계작성을 위한”을 “통계작성 :”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의 2회 위반란 “30”을 “10”으로 하고, 같은 표 바목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별표 5 제2호 바목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 바목3)을 바목4)로 하고, 같은 표에 바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제공 요청서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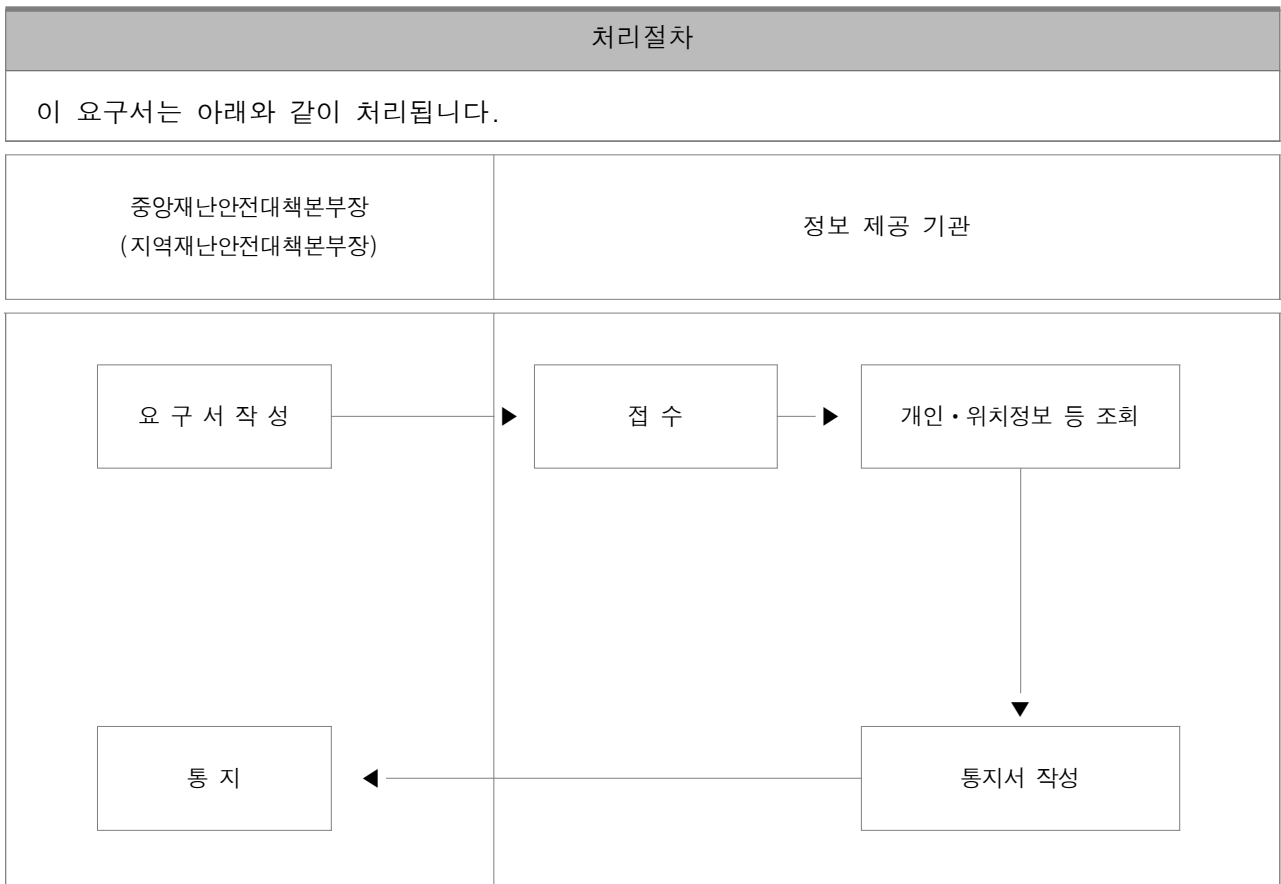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 요청 대상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요청 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등
요청 사유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정보 제공 방법	전자우편, 서면, 팩스, 전화, 위치정보시스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u>국가기반시설</u> 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 -- <u>국가핵심기반</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생 략)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방서장, 해 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u>국 가기반시설</u> 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 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 <u>국 가핵심기반</u> ----- ----- ----- -----.
③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

----- 국가핵심기반-----.

② -----
----- 국가핵심기반-----

-----.

③ -----
----- 국가핵심기반-----
-----.

④ -----

----- 국가핵심기반-----

-----.

-----.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1. 국가핵심기반-----
2. 국가핵심기반-----

3. 국가핵심기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 제5항까지-----
----- 국가핵심기반-----
-----.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
----- 국가핵심기반 -----

-----.

② -----

----- 국가핵심기반

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
 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의 -----

 -- 국가핵심기반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
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
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에 취
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제39조의2 (생략)

<신설>

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3 (현행 제39조의2와 같음)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및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

2. 점검 분야 및 대상·지역 선정 등 대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검 주체·방식·범위 등 내용에 관한 사항

5.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소관 분야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립 지침을
통보받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세부실행계
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소속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
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제3항에 따른 수립
지침 및 제5항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하단에 따른 시·도의 수립지침과 제7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7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제3항에 따른 수립지침, 제5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및 제8항에 따른 시·군·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행정안전

<신 설>

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5항에 따
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제4항
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및 제9항
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
간 실행계획 수립하고 이를 행
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
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
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39조의5(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관련 정
보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재난관리

	<u>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 ② <u>행정안전부장관과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 2의2. (생략)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u>국가기</u>	①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u>국가핵</u>

<u>반시설의 관리 실태</u> 3의2. ~ 6. (생략) ② ~ ④ (생략) <u>제42조의4</u>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u>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u>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u>물자 및 자재</u> ②·③ (생략) <u><신설></u>	<u>심기반</u>-----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u>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u> 1. ~ 7. (현행과 같음) 8. <u>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설</u> 9. <u>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시설</u> 10. ----- ----- ----- ----- <u>물자, 자재 및 시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1.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u>」 제2조에 따른 <u>인력자원</u>
--	---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의 활용 등)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물자 및 자재의 비축·관리

2. (생략)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의 활용 등) ① -----
----- 법 제34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2.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
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② 법 제34조제4항-----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5. (생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영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삭제>

<삭제>

2. 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삭제>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⑥ (생략)

제70조의2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⑤·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66조의9제2항과 관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5. (생략)

<신설>

<신설>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자료로서 점검일정,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점검결과와 그에 따른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민간기관 등에게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또는 문서, 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④ 법 제66조의9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효율적인 안전정보 수집·관리·공동이용 활성화·공개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 통계청에서 안전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시·도 안전총괄과의 과장급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의 안전통계를 소관하는 부서장

<신 설>

<신 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4. 기타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과장(또는 부서장) 및 민간 전문가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일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방법, 추진전략,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정보의 수집·관리·공개·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및제3항-----

---.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생략)

②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1. -----
--- 1천명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

-----.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축제 7일 전까지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

⑤ -----

----- 통
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⑥ ----- 제5항까지-----

-----.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 다. (생략)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
위치 정보

마.·바. (생략)

2.·3.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영상,
도면·위치 -----

마.·바.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
하고자 하는 중앙대책본부장 또
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서식
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등의 방식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
청을 받은 자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③ 법 제7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재난 대
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보시스템

2. 긴급구조기관의 정보시스템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

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3조의3(정보의 보호 등) ① 중

양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u>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u> <u>을 설치하고 운영 할 것</u> <u>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u> <u>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u> <u>보존할 것</u>
제83조의2 ~ 제83조의4 (생략)	제83조의4 ~ 제83조의6 (현행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와 같음)
제85조의2	<삭제>
<신설>	제86조의2(조사 전담기구 간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조사 전담기구 간 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 제77조제5항의 기관에서 조사 전담기구를 편성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 협조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전담기구 간의 조사계획·활동 등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전담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의 추진
과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각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제88조(업무의 위탁) (생략)

<신설>

<신설>

한다.

제8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
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1조의3제2항에 따른 재난
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

2.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제출서 접수,
시험·검사 등의 의뢰 및 관
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
안전제품 인증심사

4. 제81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5. 제81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
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
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신 설>

<신 설>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인증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124